

—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22일

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김 규 환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, 주민감사 청구의 활성화 및 제도 보완으로 청구인수를 법령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「190명 이상」으로 개정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
도 감사관실 - 5545(2005. 9. 6)호와 관련)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한 주민소송제가 2006. 1. 1 전면시행됨에 따라
- 이와 관련된 조례중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어 현행 「300명이상」으로 된 것을 「190명이상」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된 법령에 의거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개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